

「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」 개정 고시

국가기술표준원(2024. 7. 10.)

 국가기술표준원은 「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」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「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다.

1. 개정 취지

- 「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」에 따른 어린이제품 인증번호 간소화를 위해 「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」을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제조업자가 주소지 이전한 경우 인증번호에 “ch”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필요성이 결여되어 “ch” 표시 삭제

- 오탈자 수정

* 세부내용

-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(www.kats.go.kr → 고시·공고 )에서 확인

❖ 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(일부 발췌)

현행	개정
아. ⑧란에는 인증서 변경신청에 따른 인증서 재발급 식별코드(최초 신청모델에는 없으나, 안전인증서, 안전확인신고서의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최초 변경부터 순차적으로 변경(A→B)등으로 코드를 변경시켜 인증서 및 신고서를 재발급 함으로써 변경사항을 관리한다)를 기재한다. 다만, 제품에 표시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. 또한, 어린이제품 제조업자가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 라목에 따라 새로운 번호를 부여하고, 기존의 번호와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⑧란에 “ch”를 표시한다. 다만, 제품에 표시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없다.	아. ⑧란에는 인증서 변경신청에 따른 인증서 재발급 식별코드(최초 신청모델에는 없으나, 안전인증서, 안전확인신고서의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최초 변경부터 순차적으로 변경(A→B)등으로 코드를 변경시켜 인증서 및 신고서를 재발급 함으로써 변경사항을 관리한다)를 기재한다. 다만, 제품에 표시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. 또한, 어린이제품 제조업자가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 라목에 따라 새로운 번호를 부여하고, 기존의 번호와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⑧란에 “ch”를 표시한다. 다만, 제품에 표시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없다.